

고 발 장

고발인 박 근 용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전화: 723-5052)

김 은 영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전화: 723-5052)

피고발인 이 익 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현대증권(주)

사건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배임)위반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다음 고발사실과 같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 혐의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배임사실에 대한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와 이에 부합하는 공소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고 발 내 용

1. 고발인 박근용, 김은영은 참여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2. 피고발인 이익치는 현대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타인인 현대증권과 현대증권 주주들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3. 97년 7월 23일 현대전자는 보유 중이던 현대투신 주식 1천3백만 주를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에 매각하는 형태로 자금 (1억 7500만 달러)을 조달하였는데, 이 때 CIBC는 현대중공업과 3년후 (2000. 7. 24.) 연 7.875%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2억 2063만 3598달러)으로 동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의 차입자금 조달에 지급보증을 선 것입니다.

이미 신문 지상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 된 바와 같이 이러한 거래를 중개한 현대증권은 1997. 7. 1. 현대중공업과 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이 매입한 현대투신 주식(1천3백만주)을 2000년말 까지 책임지고 매각 또는 인수하여 주며, 그 총인수 가격은 최소한 본 매입 가격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으로 하며 이때의 손실이라 함은 매입관련 원리금과 매입 및 본 확약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세공과, 벌칙금, 경비등을 포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은 2000. 7. 24. 위의 각서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2000년 7월 28일 이러한 지급보증으로 입은 금전손실과 관련해 현대전자와 현대증권, 두 회사의 대표인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과 박종섭 현대전자 사장을 상대로 외화대납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였습니다.

4. 위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현대증권의 대표이사인 이익치 회장은 이러한 지급보증을 회사이름으로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에 나아간 것으로써,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637 판결).’ 고 하고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

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상식에 비추어 볼때 CIBC와 현대중공업 간 풋 옵션계약의 성격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이나와는 무관하게, 현대증권의 대표이사가 현대중공업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공한 것은 현대증권이 우발채무를 부담한 것으로서 현대증권 및 현대증권의 주주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결 론

위 사건은 현대전자가 주식매각의 형태로 외자를 유치하는 외형을 취하였으나 현대중공업이 별도의 옵션계약을 통해 지급보증을 선 사실상의 상업차관 도입입니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피고발인이 주도적으로 행함으로써 약 24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현대증권과 현대증권의 주주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법 제382조 제2항에 의거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상법제382조의 3에 규정된 충실의무에 위배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발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손해액의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라는 점등을 고려할때 핵심관련자인 피고발인 이익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2000.7.19.자 현대중공업 이사회 의사록
2. 2000.7.21.자 현대중공업 이사회 의사록
3. 2000.7.24.자 현대중공업 이사회 의사록(별첨:확약서)

2000. 8. 14.

고발인 박 근 용
김 은 영

서울지방검찰청 귀중